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56호 2020. 2. 20.(목)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432호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1
남해군 조례 제2433호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7
남해군 조례 제2434호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9
남해군 조례 제2435호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남해군 조례 제2436호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남해군 조례 제2437호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남해군 조례 제2438호	남해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	31
남해군 조례 제2439호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남해군 조례 제2440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36
남해군 조례 제2441호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40
남해군 조례 제2442호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2
남해군 조례 제2443호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15호	남해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장포 관광휴양형)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58
------------------	--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160호	도시계획도로 중로1-2호(남변교차로~평리교차로) 개설 공사 외 3건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65
남해군 공고 제2020-170호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72
남해군 공고 제2020-180호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편입 토지 분묘개장 공고	80
남해군 공고 제2020-190호	남해 힐링빌리지 민간사업자 공모 (관광휴양시설용지 특별계획 구역)	81
남해군 공고 제2020-204호	소하천 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83
남해군 공고 제2020-207호	남해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행정예고	84
남해군 공고 제2020-211호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86
남해군 공고 제2020-239호	도시계획도로(소로2-22호, 남해성당~아름다운교회)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93
남해군 공고 제2020-240호	도시계획도로(소로2-26호, 화전도서관~봉황산) 개설공사 보상 계획 열람 공고	98

회 략									
-----	--	--	--	--	--	--	--	--	--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432호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물에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시장구역”이란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시설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 센터, 콜센터 등 물류시설, 모유수유 휴게실(모유수유·착유실, 기저귀 갈이대 등), 쇼핑카트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8. “상인회”란 법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군수는 시장구역을 정할 때에는 지역 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정한다.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상인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본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구역으로 고시한 후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3.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 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5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2. 건축 중인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3. 그밖에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건축물

제6조(시장의 인정취소)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7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등과 협약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리개 등의 편의시설을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산가치가 상실된 편의시설을 상인조직 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등이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등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등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은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남해군 주차장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비 가리개는 내용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 사항은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3. 화장실은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 등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듣거나, 상인조직 등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상인회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 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접 또는 신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군수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16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등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 제9조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 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 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여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및 군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정부·군·상인조직 등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이 상인조직 등에게 있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물의 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장 등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상인조직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할 때에는 입점상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는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설립 및 지정된 것으로 본다.

남해군 조례 제2433호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남해군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34호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남해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금고 지정)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에 의한 방법(이하 “수의방법”이라 한다)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군 관할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의 협력사업비 운영)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력사업비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금고지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남해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군의회 의원, 군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하되 평가대상인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④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해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 1. 금고지정 방법.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한다.
 -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
 -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
 -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금고지정 절차)**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군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금고지정 심의결과 집계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고지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인감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각서 및 별표 1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에 허위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금고로 지정된 이후에도 금고약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금고의 중도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금고운영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본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소 계	3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평가기관	(4)	
	- 국내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2)	
	- 총자본비율(안정성)	(7)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7)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건전성)	(2)		
	소 계	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6)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소 계	18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7)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6)	
	소 계	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소 계	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2)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5조 관련)

I. 일반원칙

-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 편차는 다른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여야 한다.

II.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은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2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이상인 경우에는 만점 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이상인 경우에는 만점 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7점)

- 군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도·군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5점)

- 최근 일정기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금융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만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군과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군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별지 제1호서식]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금융기관별 점수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30			
	- 국외평가기관	(8)			
	- 국내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2)			
	- 총자본비율(안정성)	(7)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7)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 (건전성)	(2)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20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7)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6)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4)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18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7)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5)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2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6)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7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5)			
		(2)			

심사자 : 위원 (인)

남해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금고지정 심의결과 집계표

금융기관명 :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득점 합계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계		100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채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8)								
	- 국외평가기관	(4)								
	- 국내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2)								
	- 총자본비율(안정성)	(7)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7)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건전성)	(2)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7)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6)									
4.금고업무 관리능력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 능력	(8)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2)								

20 . . .

남해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금고지정 신청서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남/여)	
소 재 지	본 점		전 화	
	남해지역 사 무 소		전 화	

남해군 금고지정 신청 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 9조에 따라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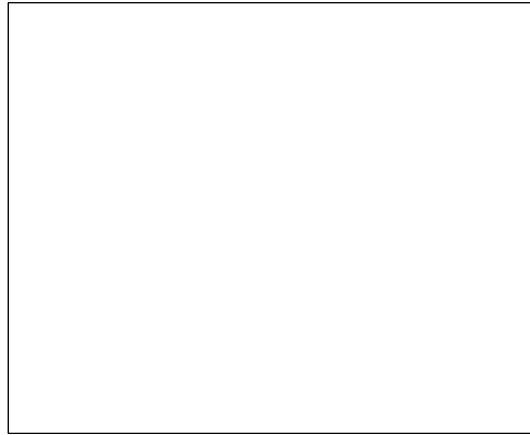
은행장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사용 인감 확인서



상기 인감은 당행의 지배인인 ○ ○ ○ 지점장 · 팀장(시도 지점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 ○ ○ ○(성명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인

남해군수 귀하

붙임 :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

[별지 제5호서식]

각 서

1. 남해군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의 모든 내용을 이행 할 것을 수락 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 되었을 때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향후 금고지정 제안서의 불이행으 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이를 감수 하겠습니다.
2. 금고지정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청구를 하지 않겠으며, 제출서류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3. 남해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존중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금 고 운 용 현 황 보 고

금융기관명 :

(단위 : 원)

회계(기금)별	총세입			총세출 (지출)	잔 액	자금운용			수익성(이자수입)		
	계	전년도 이 월	현년도			계	정기 예금	보통 예금	계	정기 예금	보통 예금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소 계)											
특 별 회 계											
기금 (소계)											
기 금											

- ※ 1.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등은 금융기관별로 작성 - 자체서식
- 2.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보고 - 자체 서식

남해군 조례 제2435호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남해군 조례 제2436호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호 중 “불편하여” 를 “불편하거나 보물섬 행복택시로 다른 대중교통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로” 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③ 보물섬 행복택시를 이용할 때 탑승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1인당 100원으로 하고, 정상요금과 탑승자 부담 요금의 차액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07시부터 21시” 를 “05시부터 22시”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 2항 중 “별표2를” “별표1을”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월 이용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일지와 운행” 을 “1개월 간 이용한 내역” 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행비용 지원신청서 (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마을 대표자를 경유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읍면장에게” 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읍면장에게 비용지급을” 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 표 1] <제5조제2항 관련>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방법

운 행 횟 수	운 행 방 법
<p>○ 마을당 월 배부되는 이용권 매수만큼 이용가능. ex) ○○면○○마을에 배부되는 월 이용권 쿠폰이 35매일 경우 최대 횟수는 35회</p>	<p>운행횟수 이내에서 운행시간을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p>

남해군 조례 제2437호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남해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 다. 남해군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38호

남해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소득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 “임산물”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2.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업을 말한다.
3.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등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고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권익증진, 소득증대와 임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남해군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산림소득 증대를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산림소득사업 지원범위) 군수는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소득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인등의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
2. 임업인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각종 행사
3. 임산물 재배지 경영 및 관리 지원 사업
4.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사업
5. 그 밖에 임업인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세부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의 선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임업인등의 자격요건
2.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재원조달 계획의 가능성
4. 임산물 육성에 대한 기대효과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39호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복지국(행정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청년혁신과, 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관광경제국(문화관광과, 지역활성과, 해양수산과, 체육진흥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가. 안전건설국(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환경녹지과, 상하수도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40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하달하는” 을 “알리는” 으로 하고, 제4조제4항 중 “유인물” 을 “인쇄물” 로 한다.

제2조(「남해군 포상 조례」의 개정)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순화양양” 을 “순화” 로 한다.

제3조(「남해군민대상 조례」의 개정)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귀감” 을 “모범” 으로 한다.

제4조(「남해군 공인 조례」의 개정) 「남해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간명하게” 를 “간단하게” 로 한다.

제5조(「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유관자” 를 “관계자” 로 한다.

제6조(「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손괴” 를 “파손” 으로 한다.

제7조(「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도괴” 를 “붕괴” 로 한다.

제8조(「남해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사계인사증에서” 를 “해당 분야 인사 증에서” 로 한다.

제9조(「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손괴” 를 “파손” 으로 한다.

제10조(「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 을 “총괄” 로 한다.

제11조(「남해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익일” 을 “다음날” 로 하고, 제21조제1항 중 “시달” 을 “통보” 로 한다.

제12조(「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의 개정)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통할” 을 “총괄” 로 한다.

제13조(「남해군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제2호 중 “손괴” 를 각각 “파손”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징구” 를 “요구” 로 하고, 제32조제2항 중 “회무” 를 “협의회의 사무” 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손괴가” 를 “파손이”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손괴로” 를 “파손으로” 로 한다.

제14조(「남해군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분기하는” 을 “갈라지는” 으로 한다.

제15조(「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의 개정)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해”를 “가뭄 피해”로 한다.

제16조(「남해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의 개정) 「남해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손괴”를 “파손”으로 한다.

제17조(「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18조(「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손괴”를 “파손”으로 한다.

제19조(「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한다.

제20조(「남해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협의회의 사무”로 한다.

제21조(「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손괴”를 “파손”으로 한다.

제22조(「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분기하여”를 “갈라져”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4호 중 “손괴”를 각각 “파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41호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이하 “문학의 섬”이라 한다.)의 위치는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417-12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의 섬”이란 서포 김만중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존하기 위하여 남해군이 건립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야외공원이 있는 곳 또는 지역을 말한다.
 - 가. 문학관 : 전시실, 북카페, 수장고 등과 부대시설
 - 나. 연수관 : 작가창작실, 민속체험관
 - 다. 야외공원 : 사씨남정기원, 구운몽원, 서포초옥 등과 부대시설
2. “시설 사용료”란 전시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전시실 작품 등을 관람하는 사람이 관람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운영 등) ① 문학의 섬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문학의 섬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학의 섬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와 함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시설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지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군수에게 문학의 섬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을 신·증설하거나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설치·사용하던 모든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⑥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6조(보험의 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문학의 섬 운영에 따른 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보험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지원받은 경비를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재정법」 등 회계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문학의 섬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수탁자의 서류 및 시설에 대하여 지도·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문학의 섬의 관리 및 운영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계약을 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탁운영이 곤란한 경우
 - ② 군수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학의 섬 시설의 일부를 위탁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과 민속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학관과 민속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3. 설날 및 추석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11조(관람시간) 문학관과 민속체험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시설사용 허가 및 사용료 등

제12조(시설사용 허가)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전시실 등을 이용하여 전시, 교육, 공연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문학의 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학의 섬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학의 섬 사용일정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 사용료) ① 문학의 섬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설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13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문학의 섬의 섬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3. 신청인이 사용일 이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경우: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반환
4. 그 밖에 시설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5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문학의 섬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시설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군수가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8조(이용료) ① 문학의 섬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이용권을 개찰하지 않은 경우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무료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관련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만 6세 이하인 영유아와 65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 소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0.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0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국가기념일, 경축일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손해배상) 시설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학의 섬의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2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문학의 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학의 섬 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의 섬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문학의 섬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위원회 기능의 대행)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유배문학관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학의 섬 시설 사용료(제13조관련)

1. 문학관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기 준	사 용 요 금	비 고
전시실	1일	40,000	※ 1일 8시간 기준 · 1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25%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2. 연수관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기 준	사 용 요 금	비 고
작가창작실	비수기·평일(1박)	40,000	
	성수기·주말(1박)	50,000	
민속체험관	비수기·평일(1일)	40,000	
	성수기·주말(1일)	50,000	

비고 : 1. 성수기: 7월 ~ 8월
 2. 주 말: 금, 토, 공휴일 전날

[별표 2]

문학관 이용료(제18조관련)

(단위 : 원)

구 분	남해군민이 아닌 자	남해군민
개인단체 및 연령 구분 없음	1,000	무료

[별지 제2호서식]

노도 문학의 섬 사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단체명)		(남/여)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시설	기본시설	문학관 (<input type="checkbox"/> 전시실) 연수관 (<input type="checkbox"/> 작가창작실 <input type="checkbox"/> 민속체험관)			
	부대시설				
사용일시(기간)					
사용목적					
비고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문학의 섬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h2 style="margin: 0;">노도 문학의 섬 사용변경허가 신청서</h2>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남/여)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일시			
	사용 시설	기본 시설		
		부속 시설		
	기 타			

변경사유	
------	--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문학의 섬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2442호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드론을 포함한 무인동력비행장치 또는 무인비행선으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자동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2. “무인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비행장치 등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인비행장치 기술의 공유, 확산을 통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 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체험학습 등의 실시와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공공행정 도입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합동 연구
3.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4. 무인비행장치 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
5.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취득 지원
6. 무인비행장치 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대회, 행사 등
7. 그 밖에 군수가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3. 정부나 도·군이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5. 그 밖에 항공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군수는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 2. 무인비행장치 산업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43호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도매시장”을 “도매시장, 가축시장”으로 하고, 제4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다만, 배출시설 신고나 허가대상은 제외)
 - 가. 소, 젓소, 말, 개, 양, 사슴 : 5두 이하
 - 나. 닭, 오리, 메추리 : 20수 이하
- 6.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기존 시설을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최초 신고 또는 허가 받은 면적에서 20퍼센트 이내로 증축하는 행위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제3조(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구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대상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밀집지역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 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젓소·말·사슴·양 : 200m이내 - 닭·오리·메추리 : 500m이내 - 개·돼지 : 1,500m <p>※ 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상 거리로 한다.</p>

고 시

남해군고시 제2020-15호

남해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장포 관광휴양형)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남해군 고시 제2019-98호(2019.7.25.)로 고시된 장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대한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2. 6.

남 해 군 수

- 1. 위 치 :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1361번지 일원
 - 2. 면 적 : 전체 - 1,940,283㎡ → 1,940,218.3㎡ 감) 66.2㎡
 체육시설 - 1,331,102㎡(변경 없음)
 휴양시설 - 609,182.5㎡ → 609,116.3㎡ 감) 66.2㎡
 - 3. 남해군관리계획(장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
 - 4. 관계도면 : 실음생략(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해군관리계획(장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2.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 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⑰	개발 진흥 지구	관광· 휴양형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1361번지 일원	1,940,284.5	감)66.2	1,940,218.3	남해군고시 제2010-32호 (2010.5.31)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⑰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변경 - 면적: 1,940,284.5m ² → 1,940,218.3m ² (감 66.2m ²)	○ 관광휴양시설 내 도로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반영

4.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1)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7	체육 시설	골프장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1361번지 일원	1,331,102.0	-	1,331,102.0	남해군고시 제2010-32호 (2010.5.31)	

남 해 군 공 보

(60) 제 656호

2020년 2월 20일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09,182.5	감)66.2	609,116.3				609,182.5	감)66.2	609,116.3	
-	I	99,995.0	감)25.2	99,969.8	I-1	I-1	산235-29번지	2,357.0	-	2,357.0	
					I-2	I-2	산235-29번지	3,309.0	-	3,309.0	
					I-3	I-3	산235-29번지	2,329.0	-	2,329.0	
					I-4	I-4	산235-29번지	5,865.0	-	5,865.0	
					I-5	I-5	산235-29번지 일원	11,111.0	-	11,111.0	
					I-6	I-6	산235-32번지 일원	6,781.0	-	6,781.0	
					I-7	I-7	1409번지 일원	7,125.0	감)25.2	7,099.8	
					I-8	I-8	산235-14번지 일원	1,225.0	-	1,225.0	
					I-9	I-9	산235-29번지	2,114.0	-	2,114.0	
					I-10	I-10	산235-11번지 일원	9,822.0	-	9,822.0	
					I-11	I-11	산235-29번지 일원	6,520.0	-	6,520.0	
					I-12	I-12	산235-32번지 일원	2,759.0	-	2,759.0	
					I-13	I-13	산235-40번지 일원	10,619.0	-	10,619.0	
					I-14	I-14	산235-29번지 일원	19,777.0	-	19,777.0	
					I-15	I-15	산235-32번지 일원	8,282.0	-	8,282.0	
-	II	75,057.0	증)11.0	75,068.0	II-1	II-1	산243-1번지	4,726.0	감)259.0	4,467.0	
					II-2	II-2	산243-1번지	6,454.0	증)307.0	6,761.0	
					II-3	II-3	산243-1번지	5,903.0	-	5,903.0	
					II-4	II-4	산243-1번지	3,382.0	-	3,382.0	
					II-5	II-5	1410번지	2,331.0	감)85.0	2,246.0	
					II-6	II-6	산243-1번지	2,610.0	증)48.0	2,658.0	
					II-7	II-7	산243-1번지	1,466.0	-	1,466.0	
					II-8	II-8	산243-1번지	7,739.0	-	7,739.0	
					II-9	II-9	산243-1번지	1,715.0	-	1,715.0	
					II-10	II-10	산243-1번지	2,756.0	-	2,756.0	
					II-11	II-11	산243-1번지 일원	35,975.0	-	35,975.0	
-	V	73,163.8	-	73,163.8	V-1	V-1	1392번지	2,962.2	-	2,962.2	
					V-2	V-2	1395번지	7,312.2	-	7,312.2	
					V-3	V-3	1387번지	3,365.6	-	3,365.6	
					V-4	V-4	1397번지	5,404.5	-	5,404.5	
					V-5	V-5	1402번지 일원	8,264.4	-	8,264.4	
					V-6	V-6	1400번지	204.4	-	204.4	
					V-7	V-7	1398번지	484.1	-	484.1	
					V-8	V-8	1393번지 일원	7,835.3	-	7,835.3	
					V-9	V-9	1390번지 일원	10,092.8	-	10,092.8	
					V-10	V-10	1396번지	2,535.4	-	2,535.4	
					V-11	V-11	1386번지	3,038.1	-	3,038.1	
					V-12	V-12	1399번지	21,664.8	-	21,664.8	
-	VI	17,423.0	증)1.5	17,424.5	VI-1	VI-1	산243-3번지	3,709.0	감)7.0	3,702.0	
					VI-2	VI-2	산243-3번지	3,809.0	증)159.0	3,968.0	
					VI-3	VI-3	1411번지	239.0	감)66.5	172.5	
					VI-4	VI-4	산243-3번지	3,162.0	감)84.0	3,078.0	
					VI-5	VI-5	산243-3번지	6,504.0	-	6,504.0	

도 면 번 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			
								기정	변경	변경후	
-	III	32,293.7	-	32,293.7	III- 1	III- 1	1332번지	22,909.7	-	22,909.7	
					III- 2	III- 2	1332번지	9,384.0	-	9,384.0	
-	IV	48,893.0	증)9.0	48,902.0	IV- 1	IV- 1	1412번지	2,761.0	증)494.0	3,255.0	
					IV- 2	IV- 2	산334-7번지	488.0	-	488.0	
					IV- 3	IV- 3	산334-9번지 일원	41,096.0	감)485.0	40,611.0	
					IV- 4	IV- 4	산334-7번지	4,548.0	-	4,548.0	
-	VII	216,962.0	감)62.5	216,899.5	VII- 1	VII- 1	산340-6번지 일원	10,686.0	-	10,686.0	
					VII- 2	VII- 2	산340-6번지 일원	9,031.0	-	9,031.0	
					VII- 3	VII- 3	산340-10번지 일원	10,512.0	-	10,512.0	
					VII- 4	VII- 4	산340-10번지 일원	2,207.0	-	2,207.0	
					VII- 5	VII- 5	산340-9번지 일원	5,814.0	-	5,814.0	
					VII- 6	VII- 6	산343-4번지 일원	5,335.0	-	5,335.0	
					VII- 7	VII- 7	산343-4번지 일원	10,611.0	-	10,611.0	
					VII- 8	VII- 8	산343-2번지 일원	5,307.0	-	5,307.0	
					VII- 9	VII- 9	산343-3번지 일원	1,928.0	-	1,928.0	
					VII-10	VII-10	산343-3번지 일원	2,565.0	-	2,565.0	
					VII-11	VII-11	1412번지 일원	12,968.0	감)85.5	12,882.5	
					VII-12	VII-12	산343-4번지 일원	2,670.0	증)23.0	2,693.0	
					VII-13	VII-13	산345번지 일원	888.0	-	888.0	
					VII-14	VII-14	산340번지 일원	5,158.0	-	5,158.0	
					VII-15	VII-15	산340-8번지 일원	6,714.0	-	6,714.0	
					VII-16	VII-16	산340-16번지 일원	3,722.0	-	3,722.0	
					VII-17	VII-17	산343-4번지 일원	12,033.0	-	12,033.0	
					VII-18	VII-18	산340-2번지 일원	21,659.0	-	21,659.0	
					VII-19	VII-19	산343-2번지 일원	933.0	-	933.0	
					VII-20	VII-20	산343-2번지 일원	3,752.0	-	3,752.0	
					VII-21	VII-21	산340번지 일원	35.0	-	35.0	
					VII-22	VII-22	산340번지 일원	36.0	-	36.0	
					VII-23	VII-23	산340번지 일원	376.0	-	376.0	
					VII-24	VII-24	산343-1번지 일원	61,974.0	-	61,974.0	
					VII-25	VII-25	산343-1번지 일원	20,048.0	-	20,048.0	
-	VIII	45,395.0	-	45,395.0	VIII- 1	VIII- 1	산343-3번지 일원	10,419.0	-	10,419.0	
					VIII- 2	VIII- 2	산343-3번지 일원	11,353.0	-	11,353.0	
					VIII- 3	VIII- 3	산343-3번지 일원	2,129.0	-	2,129.0	
					VIII- 4	VIII- 4	산343-3번지 일원	1,449.0	-	1,449.0	
					VIII- 5	VIII- 5	산343-3번지 일원	1,136.0	-	1,136.0	
					VIII- 6	VIII- 6	산343-3번지 일원	2,764.0	-	2,764.0	
					VIII- 7	VIII- 7	산343-3번지 일원	16,145.0	-	16,145.0	

남 해 군 공 보

(62) 제 656호

2020년 2월 20일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도면 번호	획지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	I - 1	I - 1	진동리 산235-29번지	용도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I - 2	I - 2	진동리 산235-29번지			
	I - 3	I - 3	진동리 산235-29번지			
	I - 4	I - 4	진동리 산235-29번지			
	I - 5	I - 5	진동리 산235-29번지 일원			
	I - 6	I - 6	진동리 산235-32번지 일원			
	II - 1	II - 1	진동리 산243-1번지			
	II - 2	II - 2	진동리 산243-1번지			
	II - 3	II - 3	진동리 산243-1번지			
	II - 4	II - 4	진동리 산243-1번지			
	V - 1	V - 1	진동리 1392번지	권장 용도	-	
	V - 2	V - 2	진동리 1395번지			
	V - 3	V - 3	진동리 1387번지			
	V - 4	V - 4	진동리 1397번지			
	VI - 1	VI - 1	진동리 산243-3번지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외 의 용도 	
	VI - 2	VI - 2	진동리 산243-3번지			
	III - 1	III - 1	진동리 1332번지			
	VII - 1	VII - 1	진동리 산340-6번지 일원			
	VII - 2	VII - 2	진동리 산340-6번지 일원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 이하 	
	VII - 3	VII - 3	진동리 산340-10번지 일원			
VII - 4	VII - 4	진동리 산340-10번지 일원				
VII - 5	VII - 5	진동리 산340-9번지 일원				
VII - 6	VII - 6	진동리 산343-4번지 일원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이하 		
VII - 7	VII - 7	진동리 산343-4번지 일원				
VII - 8	VII - 8	진동리 산343-2번지 일원				
VII - 9	VII - 9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VII - 10	VII - 10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층 이하 		
VIII - 1	VIII - 1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VIII - 2	VIII - 2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도면 번호	획지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	I - 7	I - 7	진동리 1409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도로
	II - 5	II - 5	진동리 1410번지 일원		권장용도	-
	V - 5	V - 5	진동리 1402번지 일원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의 용도
	VI - 3	VI - 3	진동리 1411번지			
	IV - 1	IV - 1	진동리 1412번지	건폐율		-
	VII - 11	VII - 11	진동리 1412번지 일원	용적률		-
	VIII - 3	VIII - 3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높이		-
-	I - 8	I - 8	진동리 산235-14번지 일원	용도	지정 용도	■ 조성녹지
	I - 9	I - 9	진동리 산235-29번지			
	I - 10	I - 10	진동리 산235-11번지 일원			
	I - 11	I - 11	진동리 산235-29번지 일원			
	I - 12	I - 12	진동리 산235-32번지 일원			
	I - 13	I - 13	진동리 산235-40번지 일원			
	II - 6	II - 6	진동리 산243-1번지		권장 용도	-
	II - 7	II - 7	진동리 산243-1번지			
	II - 8	II - 8	진동리 산243-1번지			
	II - 9	II - 9	진동리 산243-1번지			
	V - 6	V - 6	진동리 1400번지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외 의 용도
	V - 7	V - 7	진동리 1398번지			
	V - 8	V - 8	진동리 1393번지 일원			
	V - 9	V - 9	진동리 1390번지 일원			
	V - 10	V - 10	진동리 1396번지			
	VI - 4	VI - 4	진동리 산243-3번지	건폐율	-	
	IV - 2	IV - 2	진동리 산334-7번지			
	IV - 3	IV - 3	진동리 산334-9번지 일원			
	VII - 12	VII - 12	진동리 산343-4번지 일원			
	VII - 13	VII - 13	진동리 산345번지 일원			
VII - 14	VII - 14	진동리 산340번지 일원	용적률	-		
VII - 15	VII - 15	진동리 산340-8번지 일원				
VII - 16	VII - 16	진동리 산340-16번지 일원				
VII - 17	VII - 17	진동리 산343-4번지 일원				
VII - 18	VII - 18	진동리 산340-2번지 일원				
VII - 19	VII - 19	진동리 산343-2번지 일원	높이	-		
VII - 20	VII - 20	진동리 산343-2번지 일원				
VIII - 4	VIII - 4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VIII - 5	VIII - 5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VIII - 6	VIII - 6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도면 번호	획지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	I-14	I-14	진동리 산235-29번지 일원	용도	지정 용도	■ 원형녹지
	I-15	I-15	진동리 산235-32번지 일원		권장 용도	-
	II-10	II-10	진동리 산243-1번지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외 의 용도
	II-11	II-11	진동리 산243-1번지 일원			
	V-11	V-11	진동리 1386번지			
	V-12	V-12	진동리 1399번지		건폐율	-
	VI-5	VI-5	진동리 산243-3번지			
	III-2	III-2	진동리 1332번지			
	IV-4	IV-4	진동리 산334-7번지	용적률	-	
	VII-21	VII-21	진동리 산340번지 일원			
	VII-22	VII-22	진동리 산340번지 일원			
	VII-23	VII-23	진동리 산340번지 일원	높이	-	
	VII-24	VII-24	진동리 산343-1번지 일원			
	VII-25	VII-25	진동리 산343-1번지 일원			
	VIII-7	VIII-7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160호

도시계획도로 중로1-2호(남변교차로~평리교차로)
개설공사 외 3건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도시계획도로 중로1-2호(남변교차로~평리교차로) 개설공사 외 3건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055-860-3416)에 비치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 2. 6.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평리, 북변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 명칭 : 도시계획도로 중로1-2호(남변교차로~평리교차로) 개설공사
도시계획도로 소로2-22호(남해성당~아름다운교회) 개설공사
도시계획도로 소로2-26호(화전도서관~봉황산) 개설공사
도시계획도로 소로2-16호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구 분		연 장 (m)	폭 (m)	비 고
도 로 명	중로1-2호 남변교차로~평리교차로	500	20	
	소로2-22호 남해성당~아름다운교회	102	8	
	소로2-26호 화전도서관~봉황산	165	8	
	소로2-16호	228	8	

4. 사업시행자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성명 : 남해군수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6)에 비치】**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중로1-2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합계				105,789	14,039						
1	남변리	544-8	도	205	3	국 (국토교통부)					
2	남변리	545-3	도	68	25	국 (국토교통부)					
3	남변리	555	도	37,469	20	남해군					
4	남변리	555-2	답	11	11	남해군					
5	남변리	491-4	답	44	8	정O지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6	남변리	490-1	도	4,714	3,788	국 (국토교통부)					
7	남변리	490-3	답	5	5	이O훈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근저당	
8	남변리	483	도	827	69	남해군					
9	평리	1189-7	답	7	4	국 (국토교통부)					
10	평리	1599	도	2,928	2,193	국 (국토교통부)					
11	평리	1200-5	대	60	60	이O윤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남해농업 협동조합	남해군 남해읍	근저당	
12	평리	1200-2	도	123	86	국 (경상남도)					
13	평리	1594	구	47,495	839	국(농림수산식품부)					
14	평리	1224-4	답	558	493	남해군					
15	평리	1224-7	창	48	48	김O석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6	평리	1230-1	도	3,758	2,350	국 (국토교통부)					

남 해 군 공 보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7	평리	1223-5	답	37	37	장O용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남해신용 협동조합	남해군읍	근저 당	
18	평리	1221-8	도	1,489	1,386	남해군					
19	평리	1222-4	창	14	14	남해축산업 협동조합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20	평리	1230-4	답	451	451	박O효	부산 해운대구				
21	평리	1221-4	잡	213	45	남해군					
22	평리	1230-2	답	76	76	남해군					
23	평리	1231-1 4	도	5	4	남해군					
24	평리	1221-6	잡	36	35	남해군					
25	평리	1231-1 0	잡	281	278	남해군					
26	평리	1221-7	잡	99	99	남해군					
27	평리	1230-3	답	165	36	남해군					
28	평리	1180-1	답	42	1	남해군					
29	평리	1243-1	답	250	120	남해군					
30	평리	1243-3	구	260	115	남해군					
31	평리	1179-1	답	1,227	98	남해군					
32	평리	1243-4	도	50	37	남해군					
33	평리	1203-3	답	206	67	남해군					
34	평리	1221-1 2	잡	6	6	남해축산업 협동조합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35	서변리	197-5	도	639	33	국(경상남도)					
36	서변리	194-2	도	172	124	남해군					
37	서변리	196-1	도	36	24	국 (국토교통부)					
38	평리	1231-4	도	482	283	국(경상남도)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39	평리	1233-2	도	218	218	국 (국토교통부)					
40	평리	1231-1 5	잡	7	7	남해군					
41	평리	1231-1 2	구	51	51	국 (국토교통부)					
42	평리	1241-3	도	927	452	국(경상남도)					

○토지조서(소로2-22호)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합계				5,420	1,023						
1	아산리	376	전	208	35	한○숙	남해읍 망운로	남해신용 협동조합	남해군 북변리	근저당	
2	아산리	240	도	2,645	216	국	남해군				
3	아산리	253-7	대	496	3	대한예수 교장로회 아름다운 교회	남해읍 망운로				
4	아산리	242-1	대	219	10	반○련	242-1				
5	아산리	242-3	전	34	34	박○남	378				
6	아산리	375	묘	311	172	이○춘	남해읍 평리				
7	아산리	377-4	전	224	93	이○자	남해읍 망운로				
8	아산리	387-15	대	136	20	이○일	남해읍 차산리				
9	아산리	377-3	전	99	34	유○대	378				
10	아산리	387-8	대	271	5	박○조	남해읍 망운로	주식회사 경남은행	창원시 마산회원구	근저당	
11	아산리	387-21	대	43	43	박○조	남해읍 북변리				
12	아산리	387-7	대	149	123	김○기	서울 마포구				
13	아산리	387-6	대	169	16	김○기	서울 마포구				
14	아산리	386-1	대	96	84	국	남해군				
15	아산리	387-2	대	251	111	박○이	남해읍 서변리	남해군산 림조합	남해군 남해읍	근저당	
16	아산리	387-1	도	69	24	국	남해군				

○토지조서(소로2-26호)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합계				10,946	1,583						
1	아산리	352	도	989	131	남해군					
2	아산리	351-2	답	2011	462	이○윤	서울 서초구				
3	아산리	350-4	대	372	4	장○정	남해읍 아산리				
4	아산리	350-1	도	135	6	남해군					
5	아산리	1425	도	2489	32	국	국토교통부				
6	아산리	1421	구	958	29	국	농림축산식품부				
7	아산리	256-1	대	238	50	남해자애원	남해읍 아산리				
8	아산리	257	대	53	53	남해자애원	남해읍 아산리				
9	아산리	259-2	대	615	172	남해자애원	남해읍 아산리				
10	아산리	258-3	대	256	81	남해자애원	남해읍 아산리				
11	아산리	259-1	대	565	342	남해자애원	남해읍 아산리				
12	아산리	261	전	1,250	122	이○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	아산리	262	전	1,015	99	이○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 해 군 공 보

2020년 2월 20일

제 656 호 (71)

○토지조서(소로2-16호)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합계				6,331	1,825						
1	북변리	479-10	대	136	4	김○혜	남해읍 화전로				
2	북변리	480-3	대	70	70	남해군					
3	북변리	481-3	대	126	126	남해군					
4	북변리	615	도	1,230	37	국 (국토교통부)					
5	북변리	484	대	152	30	서○숙	남해읍 북변리				
6	북변리	484-1	대	53	53	남해군					
7	북변리	483-1	대	96	96	남해군					
8	북변리	487	대	188	188	남해군					
9	북변리	493-2	답	1,853	331	반○석	남해읍 남변리				
10	북변리	492-10	답	484	336	김○관	남해읍 화전로	새남해 새마을금고	남해읍 화전로	근저당	
11	북변리	491	답	86	8	최○례	남해읍 서변리				
12	북변리	466-1	답	1,146	46	이○자	남해군 고현면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근저당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13	북변리	466-6	답	232	232	지○선 외 1인	남해군 창선면	남해농업 협동조합	남해읍 북변리	근저당	
14	북변리	467	답	479	468	하○인	남해읍 화전로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근저당	

남해군 공고 제2020-170호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2. 제정이유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 변경(제1조, 별표1)
 - 나. 청소년의 정의 관련 단서 신설(제2조)
 - 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환수 조항 개정(제8조)
 - 상위법령(청소년보호법)에 근거 없이 행정상 강제징수 제도를 규정한 사항 정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해군수(참조 청년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0번길 9 남해군청 청년혁신과 교육청소년팀
- 연락처 : 전화055-860-8644, 팩스055-860-3750, e-mail : leesy226@korea.kr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로, “대하여”를 “대한”으로, “정함으로써”를 “정하여”로,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보호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제3조 중 “신고대상은 [별표 1] 의 규정 위반행위에 한한다”를 “신고대상은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법 위반행위”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를 “최초 신고자에게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의 규정에 의하여”를 “등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익근무자”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지1] 의 기준에 의한다” 를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입금하여 지급” 을 “입금” 으로,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8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6조에 따른” 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를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	지 급 액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하 한다)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법 제9조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5만원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u>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u>정함으로써</u>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u>보호하는데 기여함을</u>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청소년 보호법</u>」 제49조에 따라 ----- ----- 대한 ----- --- <u>정하여</u> ----- ----- <u>보호하는 것</u>----- -----.</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청소년</u>”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u>청소년유해환경</u>”이라 함은 <u>청소년 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약물 ·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u>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청소년</u>”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u>청소년유해환경</u>”이란 <u>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 · 학대</u>를 말한다.
<p>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u>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 위반행위에</u> 한한다.</p>	<p>제3조(신고대상) ----- ----- <u>신고대상은 별표 1과 같다.</u></p>
<p>제4조(신고방법) ① <u>제3조의 규정에 의한</u> 신고는 서면 · 구두 또는 <u>기타 전자통신매체</u>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u>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u> 한다.</p>	<p>제4조(신고방법) ① <u>제3조에 따른</u> ----- ----- <u>그 밖의</u> ----- ----- <u>각 호</u>----- -.</p>

남 해 군 공 보

(78) 제 656호

2020년 2월 20일

현 행	개 정 안
<p>1. ~ 3. (생 략)</p> <p>4. <u>기타</u>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u>의하여</u>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u>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3조 및 <u>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u>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u>법 위반행위로</u>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u>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u> 포상금을 지급한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u> 다음 각 호의 <u>1</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u>아니한다.</u></p> <p>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p> <p>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u>공익근무자</u>, <u>공공근로자</u> 등이 신고하는 경우</p> <p>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u>의한</u>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u>의하여</u>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지1]의 기준에 <u>의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 -----</p> <p>② <u>제1항에 따라</u> ----- ----- -- <u>따라</u> ----- ----- <u>누설해서는 안 된다.</u></p> <p>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 ----- <u>제4조에 따라</u> ----- ----- - <u>「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u>----. -- ----- - <u>최초 신고자에게만</u> ----- -.</p> <p>② <u>제1항에도</u> ----- <u>각 호의 어느 하나</u>----- <u>않는다.</u></p> <p>1. ----- <u>등에 따라</u> ----- -----</p> <p>2. ----- ---- <u>사회복무요원</u>----- -----</p> <p>제7조(지급) ① ----- <u>따른</u> ----- <u>따라 지급하</u> <u>되,</u>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u>따른다.</u></p>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 ----- 입금----- ----- ----- 한정하여 ----- -----.</p> <p>제8조(환수) ----- 제6조에 따른 -----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p>

남해군 공고 제2020-180호

분묘개장공고(1차)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편입 토지 내 분묘를 개장하고자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아래 신고처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소재지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66-2, 1기

2. 개장사유 :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우려지역 정비공사

3.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무연분묘 안치 : 경남 남해군 남해추모누리 봉안당/봉안 후 10년간 안치

4. 공고기간 : 1차 공고일로부터 40일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이장)처리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 공고인 연락처

- 공고인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수

- 연락처 : 055-860-3291(재난안전과 방재복구팀)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의 관계서류(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연고자 또는 관리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개장하겠습니다.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거나 누락된 분묘 또는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같음합니다.

2020년 2월 10일

경상남도 남해군수

남해군 공고 제2020-190호

남해 힐링빌리지 민간사업자 공모 (관광휴양시설용지 특별계획구역)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54번지 일원에 다양한 힐링 콘텐츠를 주제로 하는 빌리지 조성 및 가족휴양 대형 관광숙박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 중인 남해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내 특별계획구역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0.

남 해 군 수

□ 공 모 명 : 남해 힐링빌리지 내 특별계획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 사업개요

- 위 치 :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5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4년~2021년(8년)
- 사업내용 : 172,323㎡(약 52,000평)
 - 공 공 : 기반조성(도로, 상하수도 등), 힐링센터, 공원 등
 - 민 자 : 관광숙박시설(45,015㎡), 테마마을(6,822㎡)

□ 공모개요

- 공모내용 : 힐링빌리지 내 특별계획구역 민자사업자 공모
 - 면 적 : 49필지 45,015㎡(13,617평)
 - 세부내용 : 관광숙박시설(호텔형 리조트 및 빌라형 펜션 등) 유치
 - 허가조건 :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4층 이하 12미터 이하)
- 공모기간 : 2020. 2. 10.(월) ~ 4. 9.(목) (공고일로부터 60일간)

- 신청자격 : 단독 법인 또는 컨소시엄(2개 이상의 법인)
 - 자본금 4억 원 이상,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직접 운영할 업체
 - * 각 출자자의 지분을 5%이상, 최대출자자 최소 25% 초과
 - 그 밖의 세부신청자격은 공모지침서를 따름

□ 추진일정

- 사업설명 : 개별방문
 - 기간 : 2020. 2.10.(월) ~ 2.14.(금) 18:00까지
 - 장소 : 남해군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
- 사업참가의향서(서식25) 제출
 - 기간 : 2020. 2. 24.(월) ~ 2. 28.(금) 18:00까지
 - 장소 : 남해군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FAX(스캔본 전자 우편 가능)
 - fax : 055-860-3748, 전자 우편 kimyk77@korea.kr
 - 송부 후 ☎055-860-8613, 김연경 주무관에게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 사업참가의향서를 기한 내 제출한 법인에 한하여 사업제안서 제출가능
- 질의/응답 : 질의 접수기한 2020. 2. 28.(금) 18:00까지
 - 질의사항은 서면질의서(서식 22)를 이용하여 전자 우편 및 팩스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송부 후 유선으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fax : 055-860-3748, 전자 우편 kimyk77@korea.kr
 -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가의향을 제출한 전부에게 일괄 공지합니다.
질의/응답내용은 지침의 효력을 가짐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평가 : 사업신청자에게 일정 별도 통보
- 사업신청서류 접수
 - 가. 일시 : 2020년 4월 9일(목) 09:00 ~ 18:00
 - 나. 장소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남해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기타

- 사업계획서는 공모지침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미제출한 업체의 책임입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에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결과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모지침서에 따르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의 결정에 의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0-204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명)	부산지방○○○	주소	진주시 남강로
소하천명		회룡중앙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서면 중현리 1447-1번지, 1446-1번지		
	면적	1,201㎡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기간	2020. 2. 12. ~ 영구(임시 점용 : ~ 2022. 4. 30.)		
	목적 및 사유	국도77호선 중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남해군 공고 제2020-207호

남해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행정예고

「하수도법」 제61조,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 남해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11.

남 해 군 수

1. 공고기간 : 2020. 2. 11. ~ 2020. 3. 2. (21일)
2. 공고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 (<http://www.namhae.go.kr>)
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 내지 제17조
 - ※ 원인자부담금(원) = 1일 오수발생량(m³)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m³)
4.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1일 10m³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
 -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자
5. 대상지역 : 하수처리구역 내

6. 공고내역 *전년도와 동일(2019.8.1.고시)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2,320,000원/m³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2,898,000원/m³

※ 다만, 타행위로 인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단가 산정에 반영되지 못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은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부과 외 추가적인 공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7. 시행일 : 2020년 3월 3일 예정(고시일 부터)

○ 시행일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종전단가 적용

8. 의견제출

○ 본 공고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한 : 2020. 3. 2. 18:00까지 도착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 편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상하수도과

- 팩 스 : 055-860-3751

○ 문의처 : 남해군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055-860-3333)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남해군 공고 제2020-211호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남해군 농수축특산품의 홍보·판매를 위해 구축한 인터넷 쇼핑몰(이하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보물섬 쇼핑몰의 목적, 정의, 운영방법 (제1조~제4조)
- 나. 입점상품, 입점절차, 탈퇴, 쇼핑몰운영 (제5조~제9조)
- 다.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의 제척 (제10조~제16조)
- 라. 상품배송, 판매대금, 쇼핑몰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 (제17조~제19조)
- 마. 홍보, 이용자 참여행사운영, 비용의 지원 (제20조~제22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년 3월 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 유통지원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911, 팩스 055-860-3982
전자 우편 apple720@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자 우편,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유통지원과 유통수출팀(전화 055-860-391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물섬 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쇼핑몰"이란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 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인 보물섬 쇼핑몰을 말한다.
2. "입점업체"란 군내에 사업장을 둔 남해군민 또는 업체(「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입점승인을 받고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자 및 운영방법) ① 쇼핑몰은 군수가 비영리로 직접 운영하되,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쇼핑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주문접수, 배송지시 및 판매대금의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상품제공 및 상품포장을 담당한다.

제4조(웹사이트 구축·운영) 군수는 군의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 상품의 홍보·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입점상품) 쇼핑몰에 입점신청이 가능한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2.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상품. 다만, 군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제품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6조(판매방법)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한다.

제7조(입점절차) ① 쇼핑몰에 입점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입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 등 입점심사를 거쳐 입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입점을 승인할 때에는 입점업체와 입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입점의 탈퇴) ①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군수에게 쇼핑몰 입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입점업체의 탈퇴 신청이 접수 되면 즉시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완료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② 군수는 입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 승인 또는 상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신청서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2. 위법 또는 부당한 입점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3.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4.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
5. 권리(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침해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
6. 거래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의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쇼핑몰 운영 책무) ① 쇼핑몰의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 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거래행위의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입점업체는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상품정보 등을 결정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가 진다.

③ 입점업체는 상품의 공급, 판매 및 배송 등의 문제로 쇼핑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입점업체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2.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쇼핑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지역활성과장, 유통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자상거래, 유통, 농업 및 농촌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 또는 장기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3.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 4.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쇼핑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상품배송) 상품은 군수가 지정한 택배운송업체를 이용하여 배송한다. 다만, 쇼핑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택배운송업체를 지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판매대금) ① 상품의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군수는 판매대금을 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판매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을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쇼핑물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쇼핑물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 쇼핑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20조(홍보) ① 군수는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포털사이트 이용 홍보 마케팅
2. 소셜 네트워크 이용 홍보 마케팅
3.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4. 팸투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
5. 그 밖에 쇼핑물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마케팅

② 홍보비용은 군의 예산으로 하거나, 입점업체의 후원금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이용자 참여행사 운영) ① 군수는 쇼핑물의 홍보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1. 쇼핑몰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2. 회원가입 촉진 등을 위한 행사
3. 웹사이트·모바일 및 SNS의 개설(성능향상을 포함한다) 또는 개편을 기념하는 행사
4. 그 밖의 웹사이트 홍보 및 쇼핑몰 판촉을 위한 행사

② 군수는 쇼핑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단, 체험단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쇼핑몰의 활성화와 입점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입점업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배송비
2. 상품포장재 개발·제작비
3. 그 밖에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0-239호

도시계획도로(소로2-22호, 남해성당~아름다운교회)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소로2-22호, 남해성당~아름다운교회)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17.

남 해 군 수

1. 공사의 개요

- 가. 공 사 명 : 도시계획도로(소로2-22호, 남해성당~아름다운교회)개설공사
- 나. 공사위치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76번지 일원
- 다. 공사내용 : 도로개설 L=102m, B=8m
- 라. 공사기간 : 2020. 1. ~ 2021. 12.
- 마. 공사시행자 : 남해군수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별첨 및 열람 장소에 비치

- 가. 토 지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76번지 외 15필지
-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3.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20. 2. 18. ~ 2020. 3. 3.(14일)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다.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20년 4월~(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통보)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및 지장물건 철거 또는 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1)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 시 3인)

2)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 협의(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 공탁(협의 불성립 시)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055-860-34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편입 토지조서 1부.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합계				3,504	1,018						
1	아산리	376-3	전	34	34	한O숙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가길	남해 신0000합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근저당	
2	아산리	240	도	2,645	216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3	아산리	253-11	대	3	3	대한예수 00000 000교회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가길				
4	아산리	242-7	대	10	10	반O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길				
5	아산리	242-3	전	34	34	박O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길				
6	아산리	375-1	묘	169	169	이O춘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105번길				
7	아산리	377-10	전	93	93	이O자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길				
8	아산리	387-27	대	20	20	이O일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가길				
9	아산리	377-9	전	33	33	유O대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길				
10	아산리	387-26	대	5	5	박O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길	주식회O 000행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근저당	
11	아산리	387-21	대	43	43	박O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길				
12	아산리	387-24	대	123	123	김O기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13	아산리	387-23	대	16	16	김O기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14	아산리	386-1	대	96	84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5	아산리	387-22	대	111	111	박O이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길	남해군산O 00합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근저당	
16	아산리	387-1	도	69	24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이 의 신 청 서

1. 제 목	도시계획도로(소로2-22호, 남해성당~아름다운교회) 개설공사 보상계획에 대한 의견
--------	--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 대상 토지 또는 물건:
--------	----------------

4. 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남해군수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소로2-22호, 남해성당~아름다운교회)개설공사』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대상토지 및 소유자

토 지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	소 유 자		날인 (인감)	전화번호 (주택및휴대폰)	비고
			성 명	주 소			

추천 감정평가업자

법인명	수행지사	연락처	비 고

20 년 월 일

남해군수 귀하

※ 소유자 확인란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0-240호

도시계획도로(소로2-26호, 화전도서관~봉황산)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소로2-26호, 화전도서관~봉황산)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17.

남 해 군 수

1. 공사의 개요

- 가. 공 사 명 : 도시계획도로(소로2-26호, 화전도서관~봉황산) 개설공사
- 나. 공사위치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52번지 일원
- 다. 공사내용 : 도로개설 L=165m, B=8m
- 라. 공사기간 : 2020. 1. ~ 2021. 12.
- 마. 공사시행자 : 남해군수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별첨 및 열람장소에 비치

- 가. 토 지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52번지 외 12필지
-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3.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20. 2. 18. ~ 2020. 3. 3.(14일)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다.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2020년 4월~(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통보)
-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및 지장물건 철거 또는 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
-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 1)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 2)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 협의(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 공탁(협의 불성립 시)
 ⇒ 이의재결 또는 소송

-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 건축과 도시계획팀(☎055-860-34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편입 토지조서 1부.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합계				5,966	1,583						
1	아산리	352	도	989	131	남해군					
2	아산리	351-6	답	463	463	이O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	아산리	350-41	대	4	4	장O정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가길				
4	아산리	350-1	도	135	6	남해군					
5	아산리	1425	도	2,489	32	국 (국토교통부)					
6	아산리	1421-4	구	958	29	국(농림축산 식품부)					
7	아산리	256-5	대	53	53	남해000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	아산리	257	대	53	53	남해000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9	아산리	259-4	대	171	171	남해000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0	아산리	258-4	대	81	81	남해000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1	아산리	259-3	대	340	340	남해000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2	아산리	261-1	전	122	122	이O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	아산리	262-1	전	98	98	이O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이 의 신 청 서

1. 제 목	도시계획도로(소로2-26호, 화전도서관~봉황산) 개설공사 보상계획에 대한 의견
--------	--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 대상 토지 또는 물건:
--------	----------------

4. 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남해군수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소로2-26호, 화전도서관~봉황산)개설공사』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대상토지 및 소유자

토 지 소재지	지 목	편입 면적 (㎡)	소 유 자		날인 (인감)	전화번호 (자택및휴대폰)	비고
			성 명	주 소			

추천 감정평가업자

법인명	수행지사	연락처	비고

20 년 월 일

남해군수 귀하

※ 소유자 확인란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